

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(定款)

일부개정 정관안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(재)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

1. 제안이유

- 정관의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 제4호의 단순 오기 수정
 -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」 근거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에 따라 정관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정관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 제4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→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정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미성년자 (개정 2022.02.08)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	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미성년자 (개정 2022.02.08)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

현행	개정안
3.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개정 2022.02.08)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개정 2022.02.08) 4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개정 2022.02.08) 5. 노동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(개정 2020.01.08., 2022.02.08)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	의3.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개정 2022.02.08)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개정 2022.02.08) 4. 「<u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개정 2022.02.08, 2025.00.00) 5. 노동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(개정 2020.01.08., 2022.02.08)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부 칙 (2023.03.13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(2025.00.00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4. 참고사항

- 차기 이사회 의결 (2025년 10월 중 예정)